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208
-----------	------

2025년 3월 5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최유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고 체계적인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이자 교육개혁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7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사무를 이관받았고, 202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집 관리를 포함한 관련 사무를 이관받을 예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유보통합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나.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8조)
- 라.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최윤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08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이 서울특별시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자와 유치원·어린이집 관계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의 줄임말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정책을 의미합니다.¹⁾
-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관계 법령과 소관 부처 등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통합기관을 성사시킴으로써 이원화된 유아 돌봄 체계를 효율화하고 서비스의 불평등 개선 및 유아기 양육 지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 시간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20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을 추진하여²⁾ 유아교육과 영유아 돌봄 전반의 질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른 주요 과제³⁾

구분	내용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① 충분한 이용시간(12시간, 기본8시간+추가4시간) 및 일수(방학운영, 휴일돌봄 등) 보장 ②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0세 1:3→1:2, 3~5세 평균 1:12→1:8) ③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④ 통합연수체계 마련(4대 분야 중점 연수, 연수 시간 상향 등) ⑤ 교육·보육프로그램 강화(2세·5세 이음연령 지정,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등)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①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창구 일원화, 상시입학제 도입) ②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1안 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유아 정교사 구분) ③ 교사 처우 개선(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근로자→교원으로 변경) ④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⑤ 설립·운영기준 마련(설립주체 한정, 기관유형 단순화, 재산요건·시설기준 등 마련)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①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24년 내 법률 개정 추진, 경과기간을 두고 이관 준비) ②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비용지원구조 개편·통합,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③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9년까지 시스템 구축 및 개통)

1) 교육부(2023.10.),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17쪽.

2) 교육부(2024.6.)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른 5대 상향평준화 과제

3)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284번 붙임 1자료, 유보통합추진단 제출, 2024. 10. 4. 제출)

- 그동안 유보통합은 누리과정 도입과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 유아학비·보육료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통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됐으나,⁴⁾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등을 위해 국정과제와⁵⁾ 교육개혁 주요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 같은 해 7월과 9월 각각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과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해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2024년 6월 27일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표-2]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9대 과제⁶⁾

3대 분야	9대 과제	세부 내용
국가책임 교육·돌봄	① 유보통합	모든 영유아(0~5세)가 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놀봄학교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③ 함께학교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돕고, 이주 배경학생, 장애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두텁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④ 교실혁명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창의성, 비판적사고력, 협업 능력, 소통 등)을 키우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끊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⑤ 입시개혁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를

4) 교육부·보건복지부(2023.1.30.), 「유보통합 추진 방안」, 3쪽을 정리한 것임.

5) 국정목표 4. 자유훈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자료 : 대한민국 정부(2022.7.),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40쪽)

6)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개혁 9대 과제,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18&page=72771&s=moe> (검색일 2024-12-11)

		근절하며,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입시 제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⑥ 교육발전특구	지역마다 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⑦ 글로벌대학	지방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 하는 혁신허브 지역대학을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⑧ 대학 혁신 생태계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대학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⑨ 교육부 대전환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타 부처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글로벌 교육 선도 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시 유보통합 추진 일정에 맞춰 2024년 7월 1일자로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현장간담회 추진 및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 사무 업무 이관 등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2024년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⁷⁾

유형	주요 내용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7. 유보통합 추진 전담기구 설치 -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단장 서기관, 3팀 12명)
현장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및 자치구청 관계자 대상 정책 설명회 실시('23.10., '23.11., '24.8.) 현장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 어린이집연합회 대표('24.3.29.),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장방문 간담회('24.4.15.) 등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23.10~현재) - (단장) 부교육감, (부단장)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 교육청, 시청 분야별 부서 팀장 및 담당자 45명(월 구성, '24.2월·10월 확대)
인적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서울시 유보통합 협력 인력 파견('24.7.1., 1년간 교육행정 6급 2명 파견)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보육 조직·직무 및 재정분석 TF 실시('24.1월~5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공동정책연구 실시('24.3월~6월) : 공유재산 이관 방향
시범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23년~) - ① 교육과정 협력 네트워크, ② 교육·돌봄 환경 개선, ③ 교원 역량 강화, ④ 학부모 역량 강화 등 4개 과제 운영

7)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284번 붙임 1자료, 유보통합추진단 제출, 2024. 10. 4. 제출)를 요약, 정리한 것임.

유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24.8월), 운영(~'25.2.) 			
연번	유형	기관명	소재지	운영 과제
1	사립(법인)	은선유치원	송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이용 시간,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2	사립(사인)	그림유치원	동대문구	
3	사립(사인)	유안유치원	강북구	
4	가정	초롱몬테소리어린이집	노원구	
5	민간	동심영재어린이집	마포구	
6	국공립	면일어린이집	중랑구	
7	국공립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	서초구	

○ 그럼에도 유보통합은 교원양성체계 통합과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처우 문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 통합,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의 재원 분담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최근까지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재원 확보와 이관에 관한 주요 사항이 빠져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⁸⁾ 금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88.2%가 교원 자격 통합에 반대하는 등⁹⁾¹⁰⁾ 유보통합의 세부 과제별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추진 절차의 내실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8) YTN(2024.11.27.), 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71204205738 (검색일 2024-12-11)

9) 뉴스1(2024.12.3.), "유치원 교사 88% "유보통합해도 영아, 유아 담당 구분해야"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18914> (검색일 2024-12-11)

10)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유치원교사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임.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와 제2조에서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8조는 간사 운영의 근거를, 제9조는 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목적과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서울특별시 안에서 전개되는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2조는 유보통합의 정의를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정 취지에서 언급된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주요 시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되 2년마다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위원회의 존립 근거와 함께 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3조제2호가 규정한 위원회의 존속 기한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원칙적으로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¹¹⁾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¹²⁾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요건,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조문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부교육감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2명의 위원으로 정하며, 안 제4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유보통합추진단장 등 6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존속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관리 및 정비) ③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제4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서울시의회 의원과 보호자,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사자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해당 조문은 유보통합의 취지와 내용, 추진 일정, 담당 부서, 이해관계자의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동 조문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79조 제2항을¹³⁾ 준수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¹⁴⁾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위원장 구성에 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 자문기관은 상위법령 없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위원장 구성은 동 자문기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기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법 취지, 입법목적의 달성 정도, 위원회의 전문성 수준, 자문 활동의 효율성과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동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보통합이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0~5세 아동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보통합으로 인사·시설·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안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사가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¹⁵⁾ 따라 사무 전반에 있어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어 교육청 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부여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더욱이 부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자문한 사항이 정책 집행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상술된 사항을 종합할 때 안 제4조제2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역시 영유아 보육사무의 내용과 예산 규모, 사무 처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의 사무가 유보통합이 관련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특히 부교육감은 사무 전반에 있어 교육감을 보좌하고,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등을 총괄하고 있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관할하는 등 유보통합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입니다.

- 또한 교육행정국장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¹⁶⁾ 의해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학생수용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계획과 시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바, 유보통합에 따른 시설 개선 수요 증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의 법인 운영·감독 등에 있어 교육행정국장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이 규정하는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 담당 공무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¹⁷⁾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라는 점,¹⁸⁾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행정통합에 관한 문제는 자문을 통한 의견 교환보다 상호 협의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위촉직 위원에 서울시 영유아 보육 담당 공무원을 추가할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제4항 제6호에 따라 서울시 영유아 보육사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문이 필요하면 해당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을 것인바, 동 조문의 개정 필요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3.>

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3.>

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7)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18)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23. 유보통합 추진 관련, 유보통합추진단 제출, 2024. 10. 7. 제출)

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검토(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회의 소집 요건과 회의록 작성, 의결 정족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두 조문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등의 역할, 회의 소집권자와 소집 절차 등 위원회 운영의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6) 간사에 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이를 유보통합추진단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위원회 회의에 올려질 안건 정리와 자료 준비 등을 수행하는 보조기관으로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역할에 비추어 조문의 내용은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본 조문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당연직 위원인 유보통합추진단장보다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안 제7조제2항을 “간사는 유보통합추진단 담당 공무원 중 지정한다” 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¹⁹⁾
 - 그러나 당연직 위원을 간사로 지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법제처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서 별도의 인력이나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간사를

19)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두는 데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수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²⁰⁾

7)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검토(안 제8조~제9조)

- 안 제8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8조를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해 해석했을 때 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그 의결 결과가 위원회 회의 결과로 간주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²¹⁾
- 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의 자문 활동을 지원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 있어 숙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 자문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조항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호가²²⁾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용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 법제처(2022.8.),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33쪽.

21) 위의 책, 232-233쪽.

2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 행정국장을 제외하며, 위촉직 위원의 요건 중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안 제4조제4항).
- 간사를 “유보통합추진단” 에서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2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08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내실 있고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축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사 등의 요건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 행정국장을 제외하며, 위촉직 위원의 요건 중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안 제4조제4항).
- 간사를 “유보통합추진단장” 에서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 으로 하며, 안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안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안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안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u>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2명</u>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u>부교육감</u></p> <p>2. ~ 4. (생 략)</p> <p>5. <u>교육행정국장</u></p> <p>6. (생 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6. (생 략)</p> <p>⑤ (생 략)</p> <p>제7조(간사) ① (생 략)</p> <p>② <u>간사는 유보통합추진단장이 된다.</u></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u> -----.</p> <p>-----.</p> <p>② ----- <u>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u>-----.</p> <p>③ ----- -----.</p> <p><삭 제></p> <p>1. ~ 3. (조례안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삭 제></p> <p>4. (조례안 제6호와 같음)</p> <p>④ ----- -----.</p> <p>1. ~ 5. (조례안과 같음)</p> <p>6. <u>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u></p> <p>7. (조례안 제6호와 같음)</p> <p>⑤ (조례안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u>간사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성공적인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보통합”이라 함은 모든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유보통합추진단장
2. 기획조정실장
3. 교육정책국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대표
3.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교사의 대표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대표
6.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